

#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11. 16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제안이유

- 우수한 평창군관내 출신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- 가. 장학기금설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기금의 조성방법(안 제2조)
- 다. 기금의 관리는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탁.  
관리한다.(안 제4조)
- 라.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평창장학회에 위탁하여  
처리한다.(안 제6조)
- 마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평창장학회정관 및 지급  
규정에 따른다.(안 제7조)

##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29조
- 지방자치법 제133조

## 평창군조례 제 호

###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 출신의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육성 지원 하므로서 면학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종주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평창군의 출연금
2. 기금운용 수익금
3. 기타 수익금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무비 등 최소한의 경비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선발된 평창장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한다.

**제4조(기금의 관리)**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지방 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.  
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 운용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서무담당주사로 한다.  
③ 장학금은 제2조의 방법으로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금중 10%는 원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충당한다.

**제5조(회계)** 기금의 수입 및 지출, 출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**제6조(관리의 위탁)**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재단법인 평창 장학회에 위탁하여 처리한다.

**제7조(기타)** 기타 장학금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정관 및 지급규정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□ 지방자치법 제29조(예산 총계주의 원칙)

-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자치법 제133조(재산 및 기금의 설치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,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“재산”이라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자를 말한다.